

## 대한심폐소생협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기관 운영 세부규정

### 1. 목적

이 규정은 대한심폐소생협회 심폐소생술 교육기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2. 관리 및 감독

- 1) Training Center(이하, TC)는 대한심폐소생협회이며 TC는 대한심폐소생협회 심폐소생술 교육기관 관리 및 감독을 위해 BLS위원회(일반인분과)를 운영한다.
- 2) BLS위원회는 교육기관이 교육과정 운영의 인력, 장비, 장소 등의 기준을 준수하는지 현장실사(교육기관 신청서 제출 후 승인을 위한 첫 번째 교육운영 또는 기존 일반인 & 의료인 교육기관의 일반인 교육 실태 확인)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### 3.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

- 1) 교육과정은 'KACPR 일반인 교육과정' 으로 기초과정, 심화과정을 시행한다.
- 2) 'KACPR 일반인 교육과정' 은 1년에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단, 교육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1년 이상 교육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회로 사유서를 제출한다.
- 3) 교육과정에서의 인력, 장비, 기구, 장소, 교육동영상 및 운영시간은 대한심폐소생협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분류	기초과정	심화과정
교육시간(동영상)	80분	180분
강사:교육생	1:30(최대)	1:10(최대)
교육장비:교육생	1 : 1, 1 : 2, 1 : 3	
교육장비:강사	1 : 1 '교육장비 1set 당 강사 2명 배정 금지'	
교육장소	동영상 강의와 실습교육이 가능한 충분한 공간	
교육 프로그램	반응확인 및 도움요청 전화도움심폐소생술(1인 1회 실습) 가슴압박소생술 인공호흡 소개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전체과정 실습	반응확인 및 도움요청 전화도움심폐소생술(1인 2회 실습)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전체과정 실습 소아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CPR+AED 실습 기도폐쇄 처치 실습 술기평가
교육과정 인증	기초과정 프로그램 규정 준수	심화과정 프로그램 규정 준수

- 5) 교육과정과 교육생에 대한 문서(또는, 전자문서 포함)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문서에는 교육생 인적사항, 서명지(강사, 교육생), 설문지, 술기평가지를 포함한다. BLS위원회 일반인분과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최근 1년 또는 2년 동안의 교육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.
- 6) 교육기관이 대한심폐소생협회의 운영지침을 명백히 위반하거나, 교육 실적이 미비할 경우에는 1차 경고로 시정을 권고한다. 단, 대한심폐소생협회의 교육 미션과 비전에 반하는 심각한 위반사항인 경우 BLS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상정하여 운영정지 및 지정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.
  - 교육기관이 대한심폐소생협회의 운영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교육과정 불인정 및 1차 경고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
  - 교육 실적이 미비한 교육기관의 사유서와 운영계획서를 받아 1차 경고 등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
- 7) 교육기관이 2차 경고를 받은 경우 서면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.
  - 2차 경고는 1~6개월 운영정지를 부여할 수 있다.

<b>교육기관 교육규정 위반사례</b>	1) 교육서류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
	2) 교육 서류 보관 상태 불량(서명지, 술기평가지, 설문지 등)
	3) 강사 대 교육생 수 위반
	4) 장비 규정 위반(규정 - 최대 3인에 마네킹 1대, AED 1대)
	5) 교육 동영상 운영 미준수 (동영상 편집, 건너뛰기, 실습 생략, 2010 동영상 사용 등)
	6) 심화과정 운영 시 술기평가 생략
	7) 심화과정 등록 후 기초과정으로 진행하고 심화과정 결과 보고
	8) 타기관 강사 참여(예, 대한적십자사 강사/EFR 강사 등)
	9) 자격 만료된 강사 참여 및 미자격자 강의 참여
	10) 서류상 교육일정과 실제 교육 일정이 달라 확인이 안 되는 경우
	11) 교육과정에 미참여 강사를 참여강사로 등록하여 보고서 제출하는 경우
<b>2차 경고 및 TS 운영 정지 부여 기준</b>	
1~2개월 운영정지	위반 사례 중 1~2개
3~4개월 운영정지	위반 사례 중 3~4개
5~6개월 운영정지	위반 사례 중 5개 이상

- 8) 경고 또는 운영 정지를 부여받은 교육기관에서 수료한 교육생은 일반인 강사과정 교육생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.
- 9) 대한심폐소생협회는 교육의 품질을 준수한 모범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### 8. 대한심폐소생협회 심폐소생술 교육기관의 지정취소

- 1) 교육기관이 3차 경고를 받은 경우 교육기관 실사 후 BLS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.
- 2) 최근 2년간 교육 실적이 미비하여 1차 경고 후에도 1년간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2차 교육기관 실사 후 운영정지, 3차 BLS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3) 지정 취소된 교육기관은 2년간 재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.

9. 기타 사항은 대한심폐소생협회의 운영지침과 BLS위원회 일반인분과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.

10. 이 규정은 2020년 0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2020. 05. 20 대한심폐소생협회 심폐소생술 교육기관 운영 세부규정